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 ○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·보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명칭변경 반영 (안 제3~7조) : 보육시설→어린이집, 성주군농정심의회→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5. 5. 28~ 6. 17)
 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.
 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.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농촌보육.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어린이집
 가. 영유아 보육사업(교육・영양・건강・안전관리 등)
 나.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
 다.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제1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제5조제1항 전단 중 “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장(보육교사”를 “어린이집에는 원장(보육교사”로 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보육시설의 장”을 “어린이집 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금융기관을 통하여”를 “바우처카드를 통해”로 한다.
제7조제6항 중 “성주군농정심의회”를 “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업무) 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. 1. 보육시설 가. 영유아 보육사업(교육・영양・건강・안전관리 등) 나.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.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. (생 략)	제3조(업무) ----------. 1. 어린이집 가. 영유아 보육사업(교육・영양・건강・안전관리 등) 나.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.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이용대상)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보육시설 : 농업인 자녀 영유아(만4세이상 취학전 아동)를 우선하고 지역 거주(센터소재지 읍・면 우선)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. 2. (생 략)	제4조(이용대상) ----------. 1.어린이집----------. 2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센터 종사자)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,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장(보육교사와 겸임)과 취사원을 둔다.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 종사자(이하 “종사자”라 한다)를 지휘・감독한다. ② (생 략)	제5조(센터 종사자) ① ----------, 어린이집에는 원장(보육교사----------.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육료 등의 수납) ① (생 략) ②센터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시・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와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. ③보육료의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.	제6조(보육료 등의 수납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어린이집 원장----------. ③----------바우처카드를 통해 --------.
제7조(위탁운영) ① ~ ⑤ (생 략)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군농정심의회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.	제7조(위탁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----------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----------.